



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
심 사 보 고 서

심 의 안 건

1.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[의원발의]
2.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[의원발의]

금산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33호
----------	------

2026. 4 21.(화)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: 2026. 4. 8.
- 나. 제 안 자 : 심정수 의원 등 5인
- 다. 회 부 일 : 2026. 4. 8.
- 라. 상 정 일 : 2026. 4. 21. (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 - 제안설명 : 배강재 의회사무과장
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가 개정(2026. 1. 2.)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별표에서 여비 지급 기준을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, 별지 위촉장 서식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별표 여비 지급 기준 정비

(현행)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부군수 상당액

(개정)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라목 적용

○ 별지 위촉장 문구와 서식 정비

○ 그 밖의 인용 조문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, 제3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하고, 기존 조례의 인용 오류 및 서식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정비 사항을 담고 있으며,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적절히 수정하고 있음. 특히 여비 규정의 명확화는 외부 위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로서 타당하며, 법령 위반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5명, 찬성 5명, 반대 0명)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□ 별첨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34호
----------	------

2026. 4. 21.(화)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 : 2026. 4. 8.
- 나. 제안자 : 정옥균 의원 등 5인
- 다. 회부일 : 2026. 4. 8.
- 라. 상정일 : 2026. 4. 21. (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 - 제안설명 : 배강재 의회사무과장
 - 검토보고 : 이금성 전문위원
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, 관계 직원 보호 규정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변경(안 제4조제1항)

- 구성 방식 : 당초) 외부 추천 → 변경) 외부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 병행
-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, 시민단체 1개 이상 대표 또는 임원 등의 심사위원 위촉 의무화(안 제4조제2항)
-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의 의장 허가 기준(안 제10조제2항)
- 징계·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(안 제10조제4항)
- 위법·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화 (안 제11조제5항)
- 출장결과 공개 범위 개정(안 제13조)
 - 당초) 누리집 게시 → 변경)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게시로 확대
-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(안 제14조)
 -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 공개 의무화
- 공무국외출장 관련 소속 직원 보호 강화(안 제15조)
 - 부당지시 거부권 명문화 및 인사·평가상 불이익 금지 의무화
-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개정(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, 기존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·책임성·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검토의견으로는,
 - 안 제4조에서는 위원 구성 시 기존 ‘외부 추천’에 ‘공개 모집’ 절차를 병행하고, 시민단체 대표 1인 이상 포함을 의무화 하

- 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,
- 안 제10조·제11조에서는 임기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고, 징계·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의 출장 제한 기간을 명시하였음. 또한 위법·부당한 출장 판단 시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출장 제한 및 사후 관리를 강화 하였음.
 - 안 제15조에서는 의원의 부당한 출장 강요나 여행업체 알선 등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다만, 출국 45일 전 계획서 공개, 1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긴급한 국제교류 업무 발생 시에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, 시민단체 위원의 ‘다양성’ 확보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, 공모 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- 마지막으로,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, 직원 인권 보호와 외부 감사 의뢰 등 금산군의회만의 강화된 청렴 의지를 담고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5명, 찬성 5명, 반대 0명)

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

□ 별첨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.